

## 주요심결사례

2002. 10. 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10개 손해보험회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대한손해보험협회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건(2002단체 0294)	<p>손해보험협회와 대한손해보험협회, 동양화재해상보험(주),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대한화재해상보험(주), 그린화재해상보험(주), 쌍용화재해상보험(주),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LG화재해상보험(주), 동부화재해상보험(주)은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1997. 11. 25. 17:00 손해보험협회 회의실에서 제3차 공정경쟁질서확립대책위원회 및 사장단회의를 열고 긴급출동서비스와 관련하여 1998. 1. 1. 신규계약분부터 자동차종합보험, 장기보험의 긴급출동(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을 제외한 서비스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 이에 따라 각 손해보험회사들이 무료로 시행하던 긴급출동서비스 중 '기타 응급조치' 서비스(오일보충, 라디에이터캡교환, 전조등 및 브레이크등교환, 윈도브러쉬교환, 휴즈교환, 팬벨트교환, 엔진과열응급조치 등)는 1998. 1. 1부터 폐지되었으며, 손해보험협회는 1998. 3. 27. 11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1997. 11. 25. 사장단회의 결정사항의 이행내용을 제출토록 하였고, 10개 손해보험회사는 1998년 이후에도 보험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오던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 중 긴급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를 2000. 11. 1부터 2001. 3. 1. 사이에 순차적으로 폐지, 이어서 나머지 3개 서비스(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해제)도 LG화재, 동부화재를 필두로 2001. 4. 1부터 2001. 10. 1. 사이에 순차적으로 폐지하였으며, 이후 피심인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은 긴급출동서비스를 유료화 하였고, 2000. 11월 이후 5개 주요 긴급출동서비스 폐지 및 유료화와 관련하여 상호 의사연락을 하는 등 부당하게 국내 자동차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 26조제1항제1호 위반</p>	<p>▶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연명으로 2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37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손해보험협회 : 186 백만원</li> <li>• 동양화재해상보험(주) : 201 백만원</li> <li>•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 : 108 백만원</li> <li>• 대한화재해상보험(주) : 71 백만원</li> <li>• 그린화재해상보험(주) : 41 백만원</li> <li>• 쌍용화재해상보험(주) : 139 백만원</li> <li>• 제일화재해상보험(주) : 102 백만원</li> <li>•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708 백만원</li> <li>• 현대해상화재보험(주) : 398 백만원</li> <li>• LG 화재해상보험(주) : 368 백만원</li> <li>• 동부화재해상보험(주) : 394 백만원</li> </ul>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유학협회의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에 대한 건(2002제도1000)	한국유학협회의는 1999. 10월 정기총회에서 회원 유학원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 유학원들이 유학 학부과정 및 어학연수과정 등 수속내용에 따라 받아야 할 수속비를 석·박사과정은 150만원, 학부과정은 120만원, 미국 어학연수는 대학부설의 경우 40만원, 사설의 경우 30만원 등으로 획일적으로 책정한 「표준 수속비 가이드라인」을 제정, 같은 날 문서 및 팩스를 통해 모든 회원 유학원에 배포하였고, 2001. 3월부터 2002. 5월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 「표준 수속비 가이드라인」을 게재하여 운영해 왔으며, 동 가이드라인을 회원 유학원이 준수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회칙(제7조제2호) 및 윤리강령(제2호)에 동 「표준 수속비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또는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2002. 3. 15. 정기총회에서 「2002년도 일본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확정하였는 바, 수속비(수수료)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국 일본분과위에 덤핑사례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동 창구에 접수된 수속비(수수료) 인하행위에 대하여 시정요구서 및 경고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회원 유학원의 수속비(수수료) 인하를 저지하는 등 유학수속 대협업 시장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고, 또한 2002. 3. 15. 정기총회에서 「2002년도 일본분과위원회 운영방안」을 논의·확정하였는 바, 회원 유학원이 현금 환산가 5만원 이상의 경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통한 학생모집행위 등을 불공정사례로 확정, 이를 규제하기로 한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인정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반	▶ 경쟁제한행위 및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2002. 10. 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한국유일통신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2광고0857)	(주)한국유일통신은 2002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할인전화서비스 대리점 및 가입자 모집광고를 함에 있어 자기의 할인전화서비스 요금과 기간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

## 주요심결사례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통신사업자의 전화요금을 동일한 과금방법에 따라 비교하지 않으면서 「국제전화 60~80%, 시외전화 40~50%, 이동전화 평균 20% 할인」 등으로 표현, 자신의 할인전화기 서비스를 이용할 시 각종 전화요금을 현저하게 절감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당한 비교광고행위를 하였고, 전화기본료 할부에 따른 수수료 부담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월 기본료 4,000원 신용카드 이체」라고 표현하는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큰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3호 위반</p>	<p>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포토록 함</p>

2002. 10. 9. 심결

사 건 명	위 반 내 용	시 정 조 치
<p>4개 시·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의 경쟁제한행위 등에 대한 건(2002단체 0840)</p>	<p>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인천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강원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손보사의 보험차량 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해 2002. 4. 2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송도비치호텔에서 서울조합, 인천조합, 경기조합, 강원조합 이사장 및 보험대책위원이 참석한 수도권보험대책간담회 및 2002. 5월말경에 개최한 수도권보험대책위원회의 등을 통해 보험차량 정비요금을 여주대 용역결과대(표준공임 : 22,983원)로 받기로 결의하고, 동 결의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직접 FAX 및 유선 또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통보함으로써 자신들의 구성사업자들은 교환·판금공임을 여주대 용역결과와 비슷한 금액(20,000원~22,000원)으로 받았고, 상기 간담회에서 2002. 5. 16부터 5. 18까지 3일간 정비업체의 휴업 및 손보사와 정비업체가 체결한 보험수가 관련 계약서를 2002. 4. 30까지 시도조합 지역협의회를 통하여 손보사에 내용증명으로 해약통지, 보험차량 정비요금을 차주에게 직접 받기로 하는 내용 등을 결의하고, 동 결의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직접 FAX 및 유선 또는 지역협의회를 통해 통보함으로써 이들의 구성사업자들은 2002. 5. 16. 1일 동안 휴업을 실시하거나 보험차량 수리거부를 하였으며, 지역협의회는</p>	<p>▶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구성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p>▶ 과징금 납부</p> <p>(1)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25,900천원</p> <p>(2) 인천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18,700천원</p> <p>(3)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57,000천원</p> <p>(4) 강원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 13,600천원</p>

주요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2002. 5월초에 보험정비수가 관련 계약서를 보험사에 해약통보하고, 구성사업자들은 보험차량 정비요금을 차주에게 직접 청구하는 행위를 하는 등 각각 관할지역의 보험차량 정비요금 분야에서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위반</p>	
<p>(주)컴닥터119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2002유거0806)</p>	<p>(주)컴닥터119는 가맹계약자와의 당초 가맹계약시 컴퓨터부품을 의무적으로 거래하는 조건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상의 고객 A/S접속을 허용하면서, 당초 가맹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100만원 이하의 물류거래를 하는 가맹계약자에 대하여는 A/S접속을 금지하고, 일반콜센터와 우수콜센터체제를 운용하면서 120만원 이하의 물류거래가맹계약자에 대하여 일반콜센터에만 접속을 허용하고 있으며, 120만원 이상의 물류거래 가맹계약자에 대하여만 우수콜센터 회원으로 지정하고 접속을 허용하는 등 당초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거래조건을 부과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공정거래법 23조제1항제4호 위반</p>	<p>▶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기의 모든 가맹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p>
<p>(주)한국케이블TV 경기방송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2002유거0620)</p>	<p>(주)한국케이블TV 경기방송은 2002. 1. 17부터 2002. 6. 30까지 자신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 내일네트워크(주), 북파주유선방송 및 문산유선방송의 영업허가구역에서 보급형채널 상품에 신규로 가입하는 고객에 대하여 설치비 면제, 시청료 1년 무료의 고객사은대잔치 행사를 실시한 반면, 이 사건 행사 지역 이외의 다른 영업지역[자신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온누리방송(주)의 영업지역 및 인수예정지역(적성면)]에서는 설치비 15,000원~35,000원과 월 4,000원의 시청료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행사기간 동안 자신의 행사지역 가입자 수(2002년 5월말 기준)는 약80,000명에서 89,000명으로 9,000명이 증가하였고, 이에 비해 같은 기간동안 (주)내일네트워크의 가입자 수는 약105,000명에서 93,000명으로 12,000명이 감소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주)내일네트워크 등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p>	

2002. 10. 1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모토로라코리아(주)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2002경축0844)</p>	<p>(주)울산전자는 2002. 1. 18. 현대·기아자동차의 무전기 입찰 견적요청을 받고, 견적요청 제품 중 모토로라코리아(주)의 제품 GP-2100/UHF에 대하여는 단가 28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 2002. 3. 11. 동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었는데, 동 입찰견적서 제출전 자사제품의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주)울산전자에게 자기 제품의 입찰가격을 올릴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주)울산전자는 이를 거절하였고, 입찰참가전 2002. 1. 16. 동 제품에 대하여 모토로라코리아(주)의 대리점인 우리VCN으로부터 단가 260,000원(부가세 포함) 견적을 받아 이 견적에 기초하여 현대·기아자동차에 견적을 제출하였으며, 우리VCN은 (주)울산전자에게 견적서를 작성해주기 전 모토로라코리아(주)의 총판인 유니버سال텔레콤(주)으로부터 동 제품에 대하여 단가 25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견적을 받은 한편, 2002. 3. 12. (주)울산전자는 현대·기아자동차로부터 무전기 발주요청을 받아 미리 견적을 받았던 우리VCN을 통하여 유니버سال텔레콤(주)에 제품공급요청을 하였으나 모토로라코리아(주)의 (주)울산전자에 대한 공급거절방침에 의하여 거절당하였고, 모토로라코리아(주)는 2002. 2. 21. 및 2002. 3. 12. 각 총판에 “현대·기아자동차 무전기 입찰전에서 낙찰받은 (주)울산전자는 경쟁사의 대리점이므로 제품공급을 하지 말 것”과 “만약 총판 및 대리점을 통하여 제품이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자사의 영업체계 보호와 안정적인 가격유지를 위하여 출고정지, 및 대리점 해지 등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하였고, 유니버سال텔레콤(주)은 위와 같은 통보를 받은 사실과 가격이 인상되었음을 주장하면서 처음 견적가격 250,000원(부가세포함)보다 63,500원이 인상된 285,000원(부가세별도)을 요구하며 제품공급을 거절하는 등 (주)울산전자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저가투찰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울산전자가 자사의 대리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급을 거절한 것은 그 부당성이 인정되므로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제1호 위반</p>	<p>▶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2002. 10. 1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스포츠피아21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전(2002광고0977)	스포츠피아21은 2002. 7. 8~7. 12까지 스포츠조선 등의 전면광고에서 오른쪽 면에는 “발행 한국은행, 제작 한국조폐공사, 판매 제14회부산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판매대행 Spopia 21”이라는 표시하에 기념주화판매광고를 하고, 연속된 왼쪽 면에는 제품의 제조 및 판매주체 등을 명기하지 않고 특별기획명품 6종의 광고를 하였고, 구입 및 신청방법의 인터넷주문란에 “www.busanasiangames.org”이라고 표현함으로써 특별기획명품도 한국은행이 발행하고 한국조폐공사가 제작하여 부산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가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2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15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삼풍관광(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전(2002조이1124)	삼풍관광(주)은 자신이 운영하는 백암비스타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분양하면서 2000. 3. 13일자 일간지를 통하여 “용인지역의 마지막 45홀 골프장 백암 비스타CC 회원모집 / 45홀 소수회원제로 주말부킹 월 2회 보장”의 내용으로 광고하였는데, 2002. 9월 개장예정인 백암비스타컨트리클럽은 현재까지 회원제 27홀, 대중제 9홀 합계 36홀에 대한 사업승인만을 얻어 공사를 마친 상태로 회원제로 운영될 골프코스는 27홀에 불과하며, 2002. 3. 11일자로 회원제 9홀을 증설하기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이천시에 신청하였으나 2000. 8월말 현재까지 이천시로부터 위 신청에 대한 승인조차 받지 못한 단계로서, 2000. 3. 13일 광고 당시 피심인은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거나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백암비스타클럽의 45홀 전체가 회원제로 운영되며 개장과 동시에 45홀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45홀 소수회원제’라고 광고,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본 협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매뉴얼) 열람 실시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및 우리 나라 주요 기업의 준수편람(매뉴얼)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으로 미국 GE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에 관한 가이드, 일본 NEC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 미국 변호사협회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매뉴얼 (Allied Signal Inc, Amoco, The BFGoodrich, Chevron, Columbia/Health Care, The Dow Chemical,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Hogan & Hortson, IBM, ITT, Mobil, Owens-Illinois, Pfizer, The Quaker Oats, Rohm and Haas, Scientific-Atlanta Inc, TRINOVA, United Technologies, Dupont 등), 그리고 우리 나라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통신, 포항종합제철, 동양제철화학, 롯데쇼핑,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과 LG그룹의 공정거래법 업무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회원사에서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

##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작성

본 협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편람을 업종에 맞게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 계획이 있으신 각 회원사는 상담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75-8870~2 / FAX (02)775~8873

## 협회 사무실 이전 안내

지난 11월 22일 본 협회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이전한 주소는 아래와 같으며,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변동 없습니다.

새 주소 : (100-161)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7번지 우남빌딩 5층